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23년도 정기총회

■ 2023. 2. 23(목) 15:00

■ 광주전교조 217호 회의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23. 2. 23(목) 15:00
광주전교조 217호 회의실

2023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목 차

1. 창립선언문 ……3쪽

2. 개회선언 ……4쪽

3. 2022년도 감사보고 ……5쪽

4. 안건
1호 안건 : 2022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의 건 ……7쪽

2호 안건 : 정관개정의 건 ……41쪽

3호 안건 : 임원 선출의 건…… 47쪽

4호 안건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49쪽

5호 안건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63쪽

1 창립선언문

□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튼튼히 하고 보호하는 일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책임이자 의무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이미 세계 12위권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곧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모든 문제를 가정에 맡기거나 심지어는 청소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방치하고 있다.

- 2009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세에서 19세의 300여만 명의 청소년 중에서 20여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근로조건은 30여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형편이다.

- 청소년취업자의 대부분은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이며, 따라서 고용불안과 해고위협에, 저임금과 임금체불, 심지어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 따라서 오늘 우리의 아들 딸이자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받들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출범을 힘차게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연구, 조사와 교육>, <홍보와 실천>, <연대와 협력> 등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확장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광주지역의 청소년, 교육, 노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개인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광주가 명실상부한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적 청소년 노동인권 국가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을 힘차게 선언한다.

2009. 10. 30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 개회 선언

□ 성원보고

집행위원장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 YMCA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비정규직 센터
광주여성 노동자회	광주 청년유니온	광주교육희망 네트워크	전국여성 노동조합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개인 회원				

참석 인원	참석		불참	
	위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2. 23(목) 15:00

○ 장　　소 : 광주전교조 217호 회의실

○ 참석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회	정보형 집행위원장
15:05~15:15	10`	○ 2022년도 감사보고	주귀숙 감사
15:15~16:15	60`	○ 안건상정 및 심의	각 국별 국장
16:15~16:30	15`	○ 기타안건	
16:30 ~		○ 폐회	

3 2022년도 감사보고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회칙에 따라 2022년도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감사일시: 2023년 2월 2일 10시
대상기간: 2022. 1.1~ 12.31
장　　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실

1. 2022년 단체분담금은 2개 단체를 제외하고 가입단체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분담금 미납 단체에 대한 네트워크 참여의사를 다시 한 번 타진할 것과 참여 의사에 따른 분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2. 펜데믹상황 종료로 인해 2023년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국 안정화 이후 교육국 강사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합니다.

3. 펜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힘들었던 홍보, 상담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기를 주문합니다. 홍보팀 상설이 필요하나 홍보팀이 없는 관계로 사무국과 상담팀, 교육국의 적절한 참여로 함께하는 사업계획이 필요함을 주문합니다.

4. 2021년부터 진행된 네트워크 회원 감사키트 사업에 신경써서 주문 전달하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네트워크가 회원단체인 만큼 회원관리와 회원 배가운동에 신경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 집행내역 영수증빙은 잘 정리되어 있었으나 사무국장의 교체로 인해 발생된 전임자 인건비 예산반영 부분 수정을 요구, 부채해결을 위한 사무국 재정 안정화 사업부분에 신경써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5. 네트워크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교재연구소의 관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국 강사들과 관계성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듯 합니다. 홍보, 교안개발 과정, 공유등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분에 있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2023. 2. 10

감사 주귀숙 주귀숙 김류한 김류한

4 안 건

※ 제 1호 안건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건

1. 상정이유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근거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결과 보고

1.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황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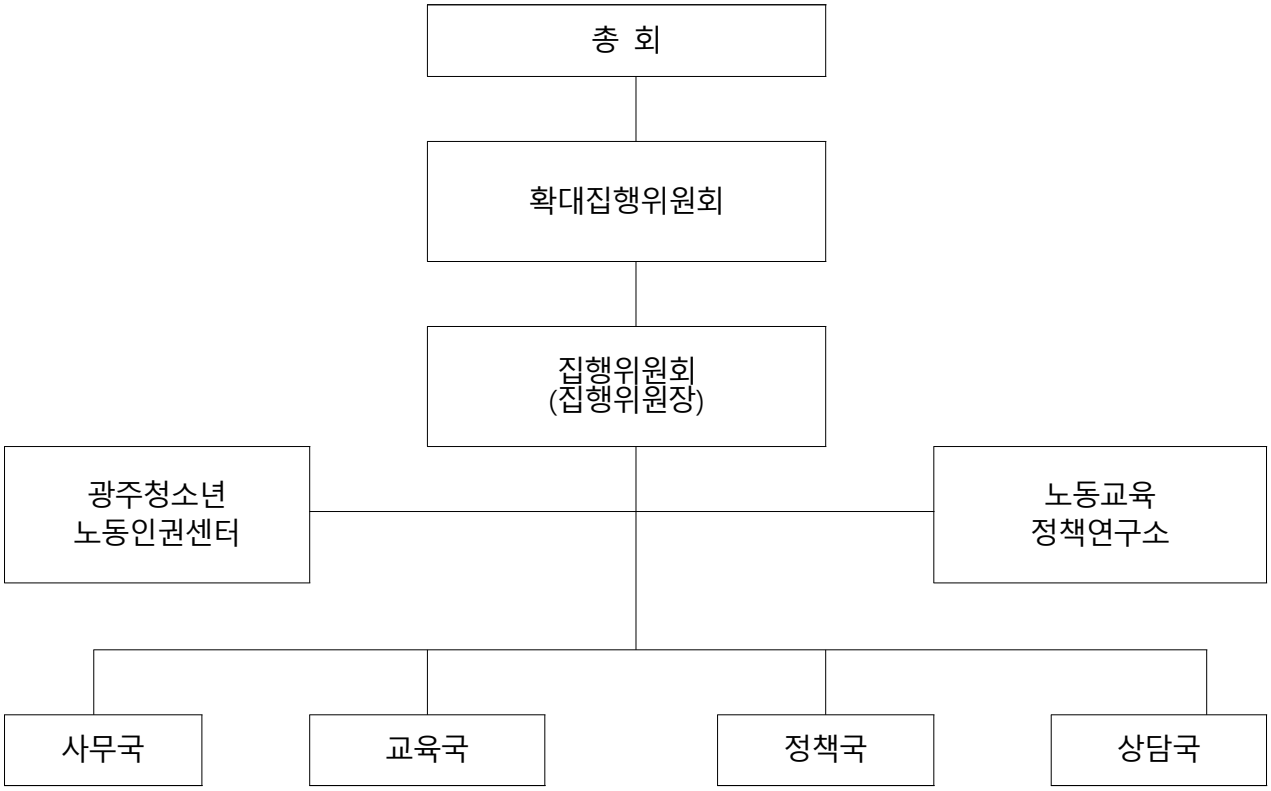

2) 회원 현황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 회원			
연번	소속 단체	성함	직책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현주	지부장
2	광주YMCA	문기전	총장
3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
4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승남	대표
5	민주노총 법률원	홍관희	노무사
6	광주여성노동자회	서연우	회장
7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김경미	지부장
8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윤영조	대표
		박서영	사무처장
9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위원장
		정수진	사무국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후원회원				
연도	신규 회원	탈퇴 현황	증감	총 회원
2018년	10명	4명	+6	50명
2019년	15명	4명	+11	61명
2020년	31명 (강사 22명)	6명	+25	86명
2021년	7명	3명	+4	90명
2022년	3명	4명	-1	89명

후원회원 명단 (가나다 순)

강민수 강창현 고은경 고은하 구희남 김경미 김경희 김덕우 김류한 김미순 김미현 김민경 김민희 김병일 김비룡 김애임 김연준 김영용 김용태 김은정 김재호 김점숙 김정은 김태옥 김현아 김희정 나경심 남소희 명등룡 문경호 민동환 박서영 박수희 박용서 박종평 박종필 박태호 박현준 백양자 서연우 선미숙 성건식 손용섭 손정기 신수연 양정규 여윤호 유승직 윤종현 윤혜경 은희모 이다영 이미애 이민호 이상일 이선봉 이승희 이연주 이완규 이유진 이지현 이혜정 이효선 임동헌 임 미 임수준 임정호 임혜정 장애화 전명훈 전성은 정보형 정예슬 정원희 정찬호 조동근 조아영 주귀숙 차유미 차현국 최경희 최루카스 최수경 최 옥 최옥경 표영민 한가람 한상규 한정일 허재준 (89명)

2. 2022년 주요 사업

1) 세부 사업 내용

	사 업 명	기 간	내 용
상담국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소	3~12월	- 월별 1회, 총 10회 활동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3~12월	-
교육국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4~12월	- 중고 544학급, 특성화고71학급 - 초등 271학급 - 학교밖 28학급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3~12월	- 6회
	노동인권교육 교안 업그레이드	2~12월	- 초등교안 개발 - 중고등교안수정보완작업 - 학교밖교안 수정 보완 작업
사무국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3~12월	- 축제부스운영 2회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3~12월	- 위탁교육기관13회,대안교육시설12회 노동인권교육 진행
	도제 및 현장실습 대응	1~12월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참여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3~12월	-
	직업학교 실태조사	3~12월	- 일반고직업위탁학생 240명설문조사 - 설문조사결과 발표 토론회개최
	회원 조직사업	2~12월	- 하반기(12월) 소식지발행 - 12월 감사키트전달
	연대사업 및 현안대응사업	1~12월	- 혐오대응네트워크 - 청소년정책연대 - 참여교육시민연대(준) - 416기억식 참여단체
연구소	노동인권교과서 집필 및 발간	1~12월	-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노동인권교과서 개정판 집필 및 발간
	노동인권교과 연구회 운영	1~12월	- 노동인권교과 연구모임 구성운영
	교육부 22년 국가교육과정 수립참여	1~12월	-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 교육과정 개발
	노동인권 직무연수	1~12월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수행	1~12월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방안 마련실태조사연구

2) 2022년 네트워크 활동일지

월	사 업 내 용	비고
1월	- 5일 교육국회의 - 6일 민관협치인권교육분과 회의 참석 - 14일 총회준비팀 1차 회의 - 19일 강사단 전체회의 - 21일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신청 완료 - 26일 총회준비팀 2차 회의	
2월	- 4일 교육청지원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진행 1 - 8일 총회준비팀 3차 회의 - 11일 총회 감사 - 11일 교육청지원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진행 2 - 15일 교육국회의 - 17일 확대집행위원회의 - 24일 2022년 네트워크 정기총회	
3월	- 10일 교육국회의 - 14일 집행위원회의 - 28일 신임 사무국장 채용	
4월	- 13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위원회 참석 - 15일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참석 - 19일 교육감예비후보 토론회 추진위원회 1차 참석 - 22일 교육감예비후보 토론회 추진위원회 2차 참석 - 26일 28일 교육감예비후보 토론회 추진위원회 3차 참석 - 26일 학교밖 자문위원회 - 28일 교육감예비후보 토론회 추진위원회 4차 참석 - 28일 전자공고 노동 인권 상담 및 홍보 활동 - 29일 전남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참석	
5월	- 16일 광주공고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 17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 - 21일 518레드페스타 캠페인 부스운영 - 22일 교육청소년시민사회원탁토론 집행위 참여 - 26일 청소년시민단체 17대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 참여	
6월	- 15일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 22일 광주교육감 이정선 당선인 면담 참석 - 28일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참석 - 27일 차별철폐 광주대행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석 - 29일 자연과학고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 29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회의참석	

7월	- 20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회의참석 - 25일 확대집행위원회의 -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대표자회의참석 - 28일 대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와 소통 자리	
8월	- 5일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 10일-12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워크숍 참석 - 16일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 17일 강사단 역량강화 회의 - 18일 개정 교육과정총론 노동인권교육 교육방향 간담회 참석 -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교문위원장 간담회	
9월	- 1일 교육국 회의 - 19일 확대집행위원회의 - 20일 숭의과학기술고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토론회 - 30일 동일미래과학고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10월	- 11일 교육국 회의 - 11일 집행위원회의 - 13일 금파공고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 14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집행부회의 참석 - 19일 강사단 역량강화회의 - 26일 전남공고 노동인권 상담 및 축제부스운영	
11월	- 2일 교육국 회의 - 8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대표자회의 - 11일 자연과학고 노동인권 상담 및 축제부스운영 - 16일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실무협의회 - 19일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 캠페인 부스운영 - 21일 일반고 직업과정위탁교육실태조사 토론회 - 29일 교육국 회의	
12월	- 8일 민관협치 활성화 워크숍 - 12일 학교 밖 자문위원회 - 12일 집행위원 회의 - 13일 광주교육시민연대(준) 대표자회의참석 - 16일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대표자협의회 - 21일 강사단 평가회 - 19-21일 시청 인권강사역량강화심화과정 참석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확대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보고

회 의 차 시	회 의 일 정	회 의 내 용
1차	2.17	- 2022년 총회의 건 - 정관개정에 관한 건 - 회원존속여부의 관한 건
2차	5.23	- 회계 관련 예비비 운영에 관한 건 - 하반기 후원회원 만남의 날 운영에 관한 건
3차	7.25	- 상담국 활동 지원 요청 대한 관한 건 - 일반고3학년 직업과정 위탁교육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건
4차	9.19	- 일반고3학년 직업과정 위탁교육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토론회에 대한 논의건
5차	12.21	- 23년 총회준비TF팀 구성에 관한 건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보고

회 의 차 시	회 의 일 정	회 의 내 용
1차	01.03	- 22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총회 준비
2차	03.14	- 확대집행위원 선임의 건 - 신임 사무국장 채용의 건
3차	04.12	-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건 -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기자회견) 참여단체에 관한 건 -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모집에 관한 건 - 교육청 교육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에 관한 건
4차	05.17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연명단체 참여에 관한건 - 회계관련 예비비 마련에 관한건
5차	06.17	- 광주교육감 당선자 면담 및 정책미팅 참석에 관한건
6차	07.22	- 22년 상반기 활동 점검 - 광주교육시민연대(준) 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7차	08.19	- 일반고 3학년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논의
8차	09.13	- 일반고 3학년 직업과정 위탁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 및 캠페인 일정 공유 - 2022 우리가 만드는 문화예술 축제!“고군분투” 홍보에 관한 건 - ‘일하는 청소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 관한 건 - 고 홍정운군 1주기 행사 참여에 관한 건 - 2022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 캠페인 부스운영 관한 건
9차	10.11	- 일반고 3학년 직업과정 위탁교육 설문조사 결과 및 이후 일정 관한 건
10차	11.02	- 후원회원 감사키트제작 전달에 관한 - 학교 밖 자문위원회 일정조율 -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봉사점수관리에 관한건
11차	11.14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설문조사결과 토론회 준비점검
12차	12.12	- 후원회원 감사키트제작 전달에 관한 건. - 확대집행위일정 및 안건 - 23년 총회준비팀구성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 사업결과보고

1.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광주지역 청소년 대상 캠페인 운영

2) 사업평가

5월, 11월에 아시아문화광장 청소년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캠페인 활동은 학생회,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진행, 자연과학고, 11월 청소년축제 홍보부스 운영은 청년유니온 회원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진행되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3) 개선방안

20년도에 실태조사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이 6.8%인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홍보, 구제활동의 캠페인 활동이 맞는지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소속 청소년
○ 사업내용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기관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 추진배경 : 매년 광주시와 진행하고 있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사업평가

- 대상을 학교 밖 경계에 있는 기관까지 넓혀 진행. 일반고직업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확대, 발굴 25학급 진행되였습니다.
  ① 교육 진행에 관한 평가
- 일반고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이 12학급으로 확대 진행되엿습니다.
- 일반고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안 교육기관의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서 25학급 배정이 초과 되어 광산구 대안교육기관교육은 광산구청에서 네트워크 강사단을 파견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홍보(캠페인)에 관한 평가

- 3년만에 진행되는 대면 청소년행사(5월 레드페스티발,11월 독립페스티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청소년을 만나 직접 근로계약서작성, 주휴수당안내, 노동에 대한 생각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홍보물품으로 휴대용 구급용품으로 준비하여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였습니다.

③ 교안 개발에 관한 평가

일반고위탁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세부화된 교육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제작,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선사항

- 청소년 쉼터, 고룡정보산업학교등 소외된 청소년 시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 12월에 개최되는 학교밖 청소년축제에도 홍보부스을 운영.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관련기관 간담회	. 2022년 사업계획 논의 및 사업 후 평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쉼터, 직업학교 등 관련 기관의 교육 요구 파악	2022.3.1.~ 2022.12.31.
간사 활동	. 관련 기관 교육 일정 조정 . 교육 컨텐츠 자료 수집을 비롯한 실무 집행	2022.3.1.~ 2022.12.31.
교육 컨텐츠 개발	. 기존 노동인권 교육 컨텐츠 자료 조사 . 2022년 개정된 노동관련 법안 조사 . 교육계획서 및 교육 PPT 제작 . 전문강사단 회의를 통한 수정 및 보완작업	2022.3.1.~ 2022.12.31.
노동인권 교육	.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실습) . 2022년 바뀐 노동법 포함한 실전 노동법 교육	2022.5.1.~ 2022.12.31.
노동인권 캠페인	. 노동인권교육과 연관된 노동인권 의식 함양 캠페인 및 홍보 용품 배포 SNS를 이용한 온라인 캠페인	2022.5.1.~ 2022.12.31.

□ 예산집행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8,080	
보 조 금 (소계)		8,000	
자문위원회	인건비	560 (7%)	무통장입금
	사업진행비	80 (1%)	유리알카드
교육컨텐츠 개발	사업진행비	800 (10%)	유리알카드
노동인권 교육	인건비	5,000 (62%)	무통장입금
노동인권 캠페인	사업진행비	1,560 (19%)	유리알카드
자 부 담 (소계)		80	
노동인권 캠페인	업무진행비	80 (1%)	유리알카드

3) 수업진행

1	대안학교	푸른꿈창작학교(9반)	
2	직업학교	광주국제직업전문학교(6반)	
3	직업학교	THE국제직업전문학교(4반)	
4	직업학교	NEw국제직업전문학교(3반)	
5	대안학교	래미학교 (1반)	
6	지원센터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반)	
7	대안학교	늘품(1반)	
대안학교 12반, 직업학교 13반			248명

3. 직업학교 실태조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

❍ 사업대상 :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

❍ 사업내용 :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진로, 학교의 관리 등 실태조사

❍ 추진배경 :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

2) 추진

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기간	추진방법
직업학교 실태조사	실태조사	9월 - 10월	- 노동인권교육(학교 밖) 말미에 QR 설문 - 직업과정교육위탁교육기관 방문 대면으로 진행 - 대면설문 240명 진행
	토론회개최	11월21일	“입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닌가요?” NGO센터 4층 시민마루

3) 지출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지출
사업비	일반사업비	프랑, 자료집 인쇄	180,000
		토론자 수당	250,500
		다과(물 등)	70,500
			501,000

4) 사업평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에 운영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주 관내16기관 중 8개 기관, 총 512명 학생중 240명) 일반고 입시 위주 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직업훈련 위탁교육에 참여하여 실제로는 전공 분야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선택함. 책임이 있는 노동부, 교육청, 원 소속 학교의 부실한 관리와 지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일반고 직업훈련 위탁교육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관심 및 여론을 형성하려 했으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고3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받는 소수의 학생들의 문제인 관계로 몇몇 시민단체를 제외한 일반시민,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5) 개선사항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에 설문조사 문항 수가 많지 않고, 설문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당사자의 답변 의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광주 일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이후에 일반고 직업위탁교육 TF팀구성이 필요합니다.

4.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대응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내용 :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관련 대응 사업

○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기간	추진방법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대응사업	모니터링	상반기	- 교육청 모니터링, 실태조사 이행사항 점검
	토론회, 기자회견 등	하반기	- 여론을 통해 현장실습 및 도제의 문제점 알리기

3) 평가

- 광주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 대상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였습니다.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전자공고, 자연과학고, 금파공고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실습 모니터링까지는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 교육청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소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선도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문제점 제기 및 언론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5.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 ~ 12.

❍ 사업내용 : 특성화고 실업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

2)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기간	추진방법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상.하반기	- TF팀 꾸려 자료수집 및 조사, 공부하기
	토론회, 기자회견 등	하반기	- 유해환경의 심각성 및 개선 필요성 여론 형성

3) 평가

-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TF팀 구성 단계부터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연구 및 자료수집 단계부터 필요성 논의 후 사업 진행 여부 판단 필요합니다.

6. 회원 조직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2022.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 사업내용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조직

2) 추진실적

- 감사키트 제작 및 발송
- 회원현황 단체회원 9곳, 개인 회원 89명

- (12월) 일년 소식지 발행
- 감사키트제작 전달(12월~1월)
- 단체 문자 발송

3) 지출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지출
사업비	일반사업비	감사키트제작	380,000
		봉투구입	11,900
			391,900

4) 평가

- 작년 네트워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했던 회원 감사키트 전달과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 자체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올해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전달, 우편전달을 위한 소통으로 후원회원들에게 네트워크 한해 활동을 전달하며, 단체 회원님들은 활동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활동이였습니다.

7. 현안 사업 및 연대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연대단체 및 관련 기관

❍ 사업내용 : 광주지역의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및 교류를 이어나가고 각종 네트워크 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연대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2) 지출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지출
사업비	대외사업비	광주 NGO 센터 회비(연 1회)	21년 12월 납부
		인권단체협력사업 자부담(연 1회)	80,000
		혐오대응네트워크 분담금(20,000*12개월)	240,500
		청소년정책연대참여 분담금	100,500
		교육시민연대(준) 분담금	100,000
		청년유니온10주기행사 후원금	100,500
		이민호학생5주기추모식 연대 분담금	100,500
		416기억식 참여단체 분담금	30,500
			752,500

3) 평가

① 전국현장실습대책회의

- 전국현장실습대책위 담당자 부재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전국현장실습대책위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권역만이라도 현장실습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해 보임.

②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함께 기자회견참석, 분담금납부 이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함.

③ 청소년노동인권 민관실무협의회

- 분기별 회의에 참석.
- 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예산 증액 요청
- 일반고 직업과정위탁교육 대상 전담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및 식비 등 지원 혜택의 현실화 등 요구

④ 광주교육감후보토론추진위원회/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교육감선거기간 동안 <광주교육감후보토론추진위원회>에 참여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주목하고, 각 단체의 문제의식과 비전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배워가는 활동이였습니다.

5월 10일 KBS 방송 토론(후보간 토론)을 추진, 5월 22일 민선4기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토론회, 5월 26일 광주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 교육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하였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준)로 전환하여 23년 2월 22일 창립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마을교육공동체포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후보 정책 질의과정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으로 각기 분산된 정보들도 하나로 모이고, 현안 문제들도 해결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⑤ 광주NGO센터

- 11월 토론회장소 시민마루 장소사용.

⑥ 이민호학생5주기 연대 분담금납부

⑦ 시민교육참여단

- 교육청 시민교육참여단에 소속되어 “시민소통의 날” 행사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 제시 이후 두드러진 활동 없이 참여만 진행됨.

8. 홍보

- 홈페이지에 회의자료 업로드

□ 총괄평가

- 대면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축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 고민되여야 합니다.
- 직업과정위탁교육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직업과정위탁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는 활동이 부족하였습니다.
- 지역 노동현안의 현장에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국 사업결과보고

1.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추진실적 :

① 강의 운영

구분	학급	시기
중학교	425	상.하반기
일반계고,특수학교	119	상.하반기
특성화고	71	상반기
초등5,6학년	271	하반기
학교 밖	16	하반기
직업위탁교육기관	12	하반기
총계	914학급	

2. 네트워크 강사단 역량강화교육(교육기획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 사업내용 :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 추진실적 :

① 역량강화 교육 진행결과

구분	내용	세부내용
3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교안수정 설명회
4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김혜영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7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초등56학년 교안 공유
9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김세영 “ 핵심 노동법 상식”
10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이수정 “노동환경의 변화와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11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모둠별 세부 주제 논의”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① 교육기획팀 운영에 관한 평가

- 교육기획팀에 참여했던 팀원들이 전원 회의에 참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어 역량강화교육의 계획과 운영이 원활하였음.
- 수업에 필요한 교구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3년에는 교육기획팀을 중심으로 교구 개발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②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관한 평가

- 1년동안 진행되었던 역량강화교육이 노동법 관련 사항,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의의, 현장의 목소리, 교안 공유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강사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
- 향후에도 노동의 이슈나 쟁점들, 중요 사항 등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면 함.
- 노동법이나 기타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통해 교육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면 함.
- 4월 역량강화교육처럼 회원들이나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제의 강좌도 필요함.

3. 노동인권교육 교안 업그레이드(교안개발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추진실적

① 교안개발팀 회의

- 2월~12월까지 총 27회
- 대면회의: 25회
- ZOOM 실시간 화상회의: 2회

② 교안개발 과정

- 전체 팀원들이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한 자료를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학년을 주제별로 담당을 해서 수정함
- 팀장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작업하고 수정된 교안을 팀원들이 다시 검토하여 최종 교안을 배포함
- 최근의 자료 및 주제에 맞는 자료로 업그레이드 함

- 초등교안은 초등학교 5~6학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사 2인이 중심이 되어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함
- 회의를 통해 전체 교안의 기본 틀을 잡고 초등교사가 기본 교안의 틀을 만들어오면 회의에서 검토하고 필요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함

③ 강의 교안 학년별 주제

구분	학년	학습주제	학습제목
초등	5학년	노동의 의미	노동아 함께놀자
	6학년	어린이 노동인권	어린이 노동인권 한걸음
기초	중1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아, 반갑다
	중2	노동의 역사와 종류	노동아, 넌 누구니?
	중3	노동 3권	노동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중급 심화	특성화고1, 인문계고3	근로계약서와 임금	내 노동의 가치
	특성화고2, 인문계고2	산업재해	산업재해
	특성화고3, 인문계고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밥상차리기
	학교 밖	근로계약서 외	내 노동의 가치

④ 교안 배포
- 1차 배포: 3월 15일 1차 수정본
- 2차 배포: 4월 6일 전체 교안 최종 수정본
- 초등교안 1차 배포: 7월 16일 5~6학년 교안 초안 배포
- 초등교안 2차 배포: 9월 23 5~6악년 최종 교안 배포
- 학교밖 교안 1차 배포: 9월 13일 교안 수정 초안 배포
- 학교밖 교안 최종안: 12월 9일(강의계획서: 12월 27일) 마무리 함

⑤ 학교 밖 교안 개발 (인권단체협력사업)
- 주제: 내 노동의 가치
- 목차: 노동의 개념,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최저임금
- 시나리오 및 강의계획서 작성
- 참여형 수업에 중점을 두고 교안을 수정, 산업재해 부분 산재그림판 활동지를 청소년에 적합한 자료로 교체, 교안 전체적으로 최신자료와 영상으로 업그레이드 함
- 기타 자료: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내용을 기타 자료로 첨부

⑥ 초등 교안 개발(시교육청 사업)

- 시교육청 장학사 2명, 초등교사 2명, 교안팀 5명으로 구성
- 초등교사가 중심이 되어 초등교안 개발
- 5학년 주제: 노동아 함께 놀자
- 6학년 주제: 어린이 노동인권 한걸음
-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참여형 수업에 중점을 두고 교안개발 진행함
- 5학년과 6학년의 1시간과 2시간용의 강의 교안 및 강의계획서, 활동자료 등을 개발함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교안개발 초에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촉자가 많아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회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팀원 개인들의 작업 시간이 많았으며 이러한 팀원들의 노력으로 교안 개발 및 교안수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현직 초등교사와 함께한 교안 개발과정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과정을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 교안팀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교육국 운영

1) 회의운영

차시	일시	논의안건
1	2월 15일(화)	1. 기존 강사자격 이수 안내 및 자격상실 후 복귀 강사 이수 기준 안내 2. 3월 역량강화교육 일정, 장소 및 내용 논의 3. 전체 교안 수정 및 보완등 일정등 논의
2	3월 10일(목)	1. 3월 역량강화교육 안내 2. 교육기획팀 연간 역량강화교육 운영 계획 3. 교안 수정, 보완 완료로 교안 설명회 진행 전 교안 배포등 일정 공유 및 논의
3	4월 6일(수)	1. 작년 수업 후기 검토 후 개선 방향 논의 2. 4월 역량강화교육 대상 및 장소 논의 3. 초등 교안개발를 위한 회의 일정 공유
4	5월 2일(월)	1. 강사단 운영회의 준비 2. 6월 역량강화교육 논의 3. 518 레드페스타 부스 운영 논의 4. 전체 교안 수정 작업 완료 및 배포등 일정 공유

5	6월 8일(수)	1. 6월 역량강화교육 안내의 건 2. 5월 교안팀 활동 보고 및 초등 교안개발 진행 상황 공유
6	7월 5일(화)	1. 역량강화교육 초등 교안 설명회로 진행 예정등 논의 2. 6월 교안개발팀 활동 보고 3. 8월 평가회 논의 및 초등 교안 조별 학습등 논의
7	8월 1일(월)	1. 8월 강사단 상반기 평가 및 초등교안 학습 일정 논의 2. 교안개발팀 7월 활동 보고 및 초등교안 설명회 논의
8	9월 1일 (목)	1. 홍보, 캠페인 활성화 논의 2. 10월 역량강화교육 일정 논의 3. 교안개발팀 활동 보고 및 학교밖 교안 수정등 논의
9	10월 11일(화)	1. 10월 역량강화교육 확정 안내 2. 교안팀 9월 활동 보고
10	11월 2일(수)	1. 11월 역량강화교육 관련 논의의 건 2. 학교밖 교안 준비의 건
11	11월 29일(화)	1. 11월 소모임 의견 공유 및 23년 교육국 구성 건 2. 하반기 강사단 평가회 준비의 건

2) 총괄평가

- 매월 1회 정기적인 교육국 회의를 통해 일정과 진행 상황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하여 전반적으로 교육국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교안 개발팀 선생님들께서는 대면, 비대면 줌으로 회의 진행을 해서 교완 보안작업을 해주셨고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각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초등 교안 개발을 위해 현직선생님들과의 협의와 논의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하반기 초등 수업까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평가됩니다.

- 교육기획팀은 올해 인원을 충원하여 다양한 기획으로 강사단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故 이한빛님 어머니 김혜영 활동가님 강의는 오픈 강좌로 강사단외에도 일반 시민도 참여가 가능해 산업재해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평가됩니다.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담국 사업결과보고

1. 상담 인력

- 상담 인력 구성이 되어 상반기에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및 홍보 활동에 참여했으나 주·객관적인 사정으로 하반기까지 결합하지 못함.
- 상담 인력 모임을 통해 상담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으나 지속되지 못해 아쉬움이 큼.

2.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 활동 운영

① 점심시간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및 홍보 활동 진행 : 6회

- 점심시간 노동인권 동아리 및 학생회 등 학생들이 피켓 홍보, 명함 배포 등 참가
- 특히 전자공고 솔선수범 학생회에서 제작한 노동인권 홍보물은 학생들의 관심 유도

- 학생에게 봉사점수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생 참여 독려

3.22. 전남공고
4.28. 전자공고 : 학생 4명 참가
5.16. 광주공고 : 학생 7명 참가
6.29. 자연과학고 : 학생 3명 참가
9.20. 숭의과학기술고 : 학생 6명 참가
10.13. 금파공고

② 축제로 찾아가는 상담 및 홍보 활동 진행 : 4회

9.30. 동일미래과학고
10.26. 전남공고
11.11. 자연과학고
11.19. 독립페스티벌

3. 202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 52건
- 상담 종결 : 49건
- 이송 : 3건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2건 / 노동청 진정 1건)

4. 하반기 노동인권 피켓 및 대일밴드 홍보물 추가 제작

5. 예산 반납
- 노동인권 상담·홍보 활동에 따른 사업비
① 상담·홍보활동비: 91,000원 지출
② 상담사 역량 강화: 미집행

6. 총괄 평가
- 상담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했지만 진행하지 못함
- 특성화고 학교 섭외 시 노동인권 담당 교사가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취업부장, 진로부장으로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학교 섭외 시 교감 등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 점심시간 홍보물을 배포하고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작업이 쉽지 않음
- 대표적으로 돌잔치뷔페, 웨딩홀은 근로계약서 없이 각종 수당 미지급 사업장이지만 상담을 넘어선 권리구제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연구소 사업 결과보고

1.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노동인권교과서 개정판 집필 및 발간

- 배경 :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가 2015 교육과정인 관계로 사용 연한이 2024년에 끝나는 관계로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에 맞춘 개정 교과서 집필이 필요
- 변경 사항 : 2022 개정교육과정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판이 아닌 수정판으로 집필
- 집필진 :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교사 5명
- 결과 : 수정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집필 완료 및 발간

2. 노동인권 교과 연구회 운영

- 목적 : 노동인권 교과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 방법 : 광주광역시 관내 13개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과 담당교사 중심으로 운영
- 추진 경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노동인권 교사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결과 : 2회에 걸쳐 노동인권 교과 운영 교사 대상 연수 실시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사대상 노동인권 직무연수

- 목적 : 노동인권 교과 담당 교사 역량 강화
- 대상 : 노동인권 교과 담당교사
- 추진 경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교사들의 참여 저조로 인한 사업 수행의 부담감을 가짐
- 결과 : 2022년 8월 예정로 예정 되었으나 진행되지 않음

4. 노동인권교육 컨설팅단 활동

- 목적 : 노동인권교육 확산
- 방법 :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과를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려는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컨설팅
- 결과 : 컨설팅 요청 미접수

5. 교육부 2022 국가교육과정 수립 참여

- 분야 : 국가교육과정 총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 교육과정
- 주관 기관 : 교육부
- 수행 기관 : 경기교육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추진 경과 : 문재인 정부때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의 가치’를 포함시켰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과교육과정 총론에서 삭제가 되고,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만 포함이 됨.
- 결과 :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교과 교육과정 개발완료

6.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 분야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 수행 기관 :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추진 경과 :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수탁하여 연구원 7명이 구성되어 연구용역 수행
- 결과 :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완료

2022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평가

□ 위탁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사업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광역시 청소년

○ 목　　적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 주요내용

- 정책 사업
-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 교육 사업
- 홍보 및 캠페인 사업

○ 소요예산 : 350,000천원

□ 사업개요 : 4개 분야, 16개 사업

□ 예 산 액　　(단위 : 천원)

합계	인력운영비	센터기본경비	사업비
350,000천원 (100%)	184,501천원 (53%)	68,673천원 (19.6%)	96,826천원 (27.6%)

2022년 사업 추진결과

분야	세부사업명	시기 (월)	참여횟수		비고
			인원 수	횟수	
정책	청소년 배달라이더 노동인권 실태조사	3~9월	60명	1회	신설
	정책토론회	11월	25명	1회	지속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2월~11월	2,200명	7회	확대
	초단시간 청소년노동자 지원금	6~9월	60명	1회	확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실태조사	8월~12월	240명	1회	신설
상담 및 법률 지원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1~12월	480명	600회	지속
	영세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마을노무사)	3~12월	15명	15회	신설
교육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월~12월	50명	10회	지속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콘텐츠 제작	1월~12월	9명	3회	신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3월~11월	25명	6회	신설
	청소년시설기관 인사.노무교육	3월~12월	20명	2회	신설
	청소년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7월~12월	4명	8회	신설
홍보 및 캠페인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1월~12월	113,060명	83회	지속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	2월~12월	2,000	10회	신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서포터즈 운영	3월~12월	6명	28회	지속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 결과 발표회	3월~12월	6명	28회	신설
4개	16개	1~12월	118,260	804	지속:5 신설:9 확대:2

□ 총괄평가

1) 교육전담인력 배치로 지역 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발판 마련

- 올해 교육전담인력이 새로이 배치되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쉼터,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서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20년 8회 121명, 21년 12회 121명에서 22년 23회 192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발판이 마련됨.
- 지역의 요구를 수렴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직업계고 노동인권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밖청소년, (예비)현장실습생, 청소년 시설기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교안과 플랫폼 노동자 찾기 모둠활동 지도안을 개발함.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을 연 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년에 이어 청소년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인사노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에 소규모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사업이 교육전담인력 배치로 탄력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됨.

2)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안을 모색함

- 배달시장의 확대로 배달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개선요구는 높았으나 청소년 배달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현황 파악은 미흡했던 실정으로, 광주 소재 만 24세 이하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근로조건, 안전·산재·인권, 애로사항·희망서비스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광주지역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개발함.

3)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일괄 점검으로 공신력 강화

- 2017년부터 선정된 친화사업장 총 75곳에 대해 신규 신청 사업장과 동일하게 서류접수 및 서류 심사 후,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일괄 점검을 실시하여 친화사업장 선정조건인 근로계약서 작성·배부, 최저임금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재확인함. 점검 결과, 사업주거부 11곳, 폐업예정 2곳, 노동자비추천 1곳, 청소년노동자 미고용 7곳, 총 21곳의 불성실한 사업장을 걸러냄.
- 주휴수당의 경우 주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의 성행으로 22년 친화사업장 총 77곳 중 35%에 해당하는 27곳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3년도에는 단시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과 초단시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계획임.

4) 사업주 대상 사업 확대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 친화사업장 선정 사업에 이어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노무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인터넷 또는 지인을 통한 부정확한 노무 정보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주에게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무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적법한 노무 정보에 의해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좋은 취지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신청을 받지 못함. 이유는 사업 추진 예산 부족으로 전체 사업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어 외부 홍보 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못함. 이에 따라 광주 외식업 중앙회의 협조로 사업주 신청을 받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18개 업소 모두 요식업에 한정 됨.

5)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금' 사업 타지역으로 확산

- 2년 연속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사업 실시로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타기관(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초단시간 노동자 '쉼과 '회복' 지원 사업)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 사업이 타지역으로 확대 됨.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응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감으로써 초단시간 노동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일깨움.

6)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운영 -> 사업주 상담 증가, 청소년 상담층의 감소

- 올해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한 결과, 사업주의 상담률이 21년 2.09%에 비해 22년 15.3%로 13.2% 대폭 증가함. 이는 사업주 대상 사업 확대에 따른 후속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노동법을 알아보고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고무적인 현상임.
-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21년도 10대 16%, 20대 56.7%에 비해, 22년에는 10대 7.4%, 20대, 44.1%로 10대는 8.6%, 20대는 12.6% 감소함.
- 2018년 이후 청소년 고용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진 않지만, 알바지킴이 상담센터의 설립 목적이 청소년 노동자 상담을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상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밀집지역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각 분야별 평가

1. 정책 분야

1) 배달시장의 확대로 배달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개선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청소년 배달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현황 파악은 미흡했던 실정으로, 광주 소재 만 24세 이하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근로조건, 안전·산재·인권, 애로사항·희망서비스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광주지역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

2)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시민사회단체, 의회, 시청, 교육청 등 지역 내에서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개발함.

3)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음식점, 카페 등 외식업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022년 현수막, SNS, 지역상인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원,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

4) 지원금(광주상생카드) 수령 단계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알림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단순 지원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초단시간 노동 문제의 연대 의식을 형성함.

2. 상담 및 법률지원 분야

1) 코로나19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이 대폭 축소되고, 청소년의 노동 경험율 자체가 2017년 14.9%, 2020년 6.8%로 대폭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600회 이상 상담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담 상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시행한 결과, 평균 5.0(평점 5.0 척도)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음.

2) 영세사업주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 참여자 18명 중 10명에게 만족도 설문을 시행한 결과, 평균 4.98(평점 5.0 척도)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음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사업 운영에 지장 되지 않고 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음.

3. 교육 분야

1) 광주시교육청 주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사업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외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밖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20년 8회, 21년 12회, 22년 23회로 대폭 증가, 노동인권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해나가고 있음.
2) 지역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업계고 노동인권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랫폼 노동자 쟁점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지역의 요구와 현안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함.
3) 청소년시설기관 인사노무교육 후에도 추가 상담으로 이어지는 빈도수가 높아 인사·노무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음. 1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시설기관의 노동법 준수의식과 권리의식을 강화함.
4) 노동인권 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여 청소년들의 노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인권 의식을 포함한 시민성 역량을 함양하고, 주변 노동자를 살피는 마음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정립함.

4. 홍보 분야

1) 노동 관련 상식 자료를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SNS에 주1회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이를 통해 센터를 꾸준히 홍보한 결과, 200명 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년 만에 861명(23.01.06. 기준)으로 SNS 팔로워가 4배 증가하는 등 센터 홍보 활동에 관심을 표하는 시민들이 확대되고 인지도가 향상됨.
2) 기존의 캠페인 진행방식에서 더 나아가 취업박람회 부스 운영과 배달 노동자 인식개선 온라인 캠페인을 시도함. 취업박람회의 특성상 노동을 경험한 사람 혹은 노동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상담 부스 참여가 높았음. 또한, 배달 노동자 인식개선 온라인 캠페인에 798명이 참여하는 등 다각화된 온·오프라인 캠페인이 시민들의 관심을 모음.
3) 2016년 센터 개소 후 처음로 사업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성과 및 발자취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참석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토크 방식의 진행방식으로 소통력을 높이고, 참석자로부터 센터와 센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센터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함.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결산보고

관	항	목	내 용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	집행
수입		**이월금액**	**12월30일 잔액(13,791,711)**	**9,698,194**	**4,093,517**	
	회비 수입	단체별회비	전교조광주지부(100,000원*12개월)	1,200,000	1,200,000	100%
			YMCA(30,000원*12개월)	0	-	0%
			민주노총광주법률원(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광주비정규직센터(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참교육학부모회(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교육희망네트워크(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광주여성노동자회(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전국여성노동조합 (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광주청년유니온(10,000원*12개월)	120,000	-	0%
		후원회비	후원회원 90명 (1,000,000원*12개월)	12,000,000	11,570,000	96%
		센터특별회비	180,000원*12개월	2,160,000	2,365,000	109%
		강사비 후원	강사료*16%	15,000,000	18,335,368	122%
	회비수입 누계			32,640,000	**35,630,368**	109%
	기타 수입	일자리안정자금	30,000원*12개월	360,000	180,000	50%
		일시후원	일시후원	200,000	400,000	200%
		차입금	집행부	0	**6,000,000**	
		기타	기타(이자수입)	1,500	16,783	
			상담국회의비,4대보험료반환	561,500	644,390	115%
	기타수입 누계			1,123,000	7,241,173	
수 입 총 계				42,899,694	**42,871,541**	100%

관	항	목	내 용			
지출	사업비	교육사업비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500,000	500,000	100%
			교육부국장 업무추진비	200,000	200,500	100%
			교육국 회의비 (50,000원*12회)	600,000	417,000	70%
			교육안개발팀 업무추진비 (500,000원)	500,000	500,500	100%
			교육기획팀 업무추진 (400,000원)	400,000	400,000	100%
			강사단 평가회 및 회의비 (100,000원*4회)	600,000	220,000	37%
		교육사업비 누계		2,800,000	2,238,000	**80%**
		상담사업비	상담 후 식사비 8,000원*4인*10회	320,000	320,500	100%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300,000	-	0%
		상담사업비 누계		620,000	320,500	**50%**
		연구사업비	연구소 운영비 (50,000*4회)	200,000	-	0%
		연구사업비 누계		200,000	-	0%
		대외사업비	전국네트워크 분담금	-		
			광주 NGO 센터 회비 (연1회)	납부함		
			인권단체협력사업 자부담 (연1회)	80,000	80,000	100%
			혐오대응네트워크 분담금 (20,000*12개월)	240,000	240,500	100%
			현안 연대 사업비	300,000	432,000	144%
		대외사업비 누계		620,000	752,500	121%
		일반사업비	기자회견 및 집회진행(50,000원*3회)	150,000	-	0%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200,000	-	0%
			직업학교 실태조사	500,000	501,000	100%

			특성화고 유해환경 개선사업	200,000	-	0%
			감사키트 제작	800,000	424,100	53%
		일반사업비 누계		1,850,000	925,100	50%
사업비 누계				6,090,000	**4,236,100**	68%
	홍보비	홍보사업비	캠페인 (명함,프랑)	150,000	84,500	56%
홍보비 누계				150,000	**84,500**	56%
	회의비	운영위회의비	확대집행위원회의 운영	300,000	117,300	39%
		집행부회의비	집행회의 운영	240,000	46,700	19%
		정기총회의비	정기총회 (제본 및 다과, 식사)	200,000	291,500	146%
회의비 누계				740,000	**455,500**	62%
	운영비	사무국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50,000원*12월)	600,000	650,300	108%
		전화요금	전화요금	150,000	96,760	65%
		출장비	전국네트워크, 현장실습대책위 출장비	500,000	93,900	19%
		사무용품구입비	일터 정기구독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	71,000	71%
		홈페이지등록	년 1회 등록비	141,300	141,300	100%
		지급수수료	CMS 수수료 등	1,000,000	917,534	92%
		보증보험료	센터사업비보증보험,CMS 보증보험	315,000	344,660	109%
운영비 누계				3,016,300	**2,315,454**	77%
	인건비	전임자급여	2022년 급여(-4대보험-세금제외전 금액) 25,026,000 예산반영오류)	22,580,880	25,071,450	111%
		전임자퇴직금	2021년 4월- 2221년 3월	-	2,086,000	
		퇴직연금	시급 9,500*209시간+100,000	2,085,500	1,504,800	72%
		4대 보험	산재,고용,국민,건강	2,447,050	2,482,220	100%
인건비 누계				27,113,430	**31,144,470**	113%
	예비비	예비비		5,995,564		
		예비비지출	일곡중수업추진비		**542,000**	9%
지 출 총 계				42,899,694	**38,778,024**	89%

■월별 결산내역

	수입	지출
이월		9,698,194
1월	1,730,000	2,505,373
2월	2,090,000	2,722,543
3월	1,764,606	6,906,606
4월	1,395,000	2,511,055
5월	3,750,390	3,584,530
6월	1,305,280	2,578,906
7월	5,355,000	2,847,424
8월	7,233,000	2,819,085
9월	1,385,000	2,906,129
10월	1,315,000	2,649,903
11월	1,305,000	3,151,659
12월	14,243,264	3,594,811
합계	42,871,540	38,778,024
22.12.30잔액	13,791,711원 (-6,000,000원)	

※ 제 2호 안건 : 정관 개정의 건

1. 상정이유

○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근거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정관	개정안
제 2 장 조 직 제6조(조직의 가입 및 탈퇴) ① 신규 단체 가입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확대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② 가입 단체는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확대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조직의 가입 및 탈퇴) ① 신규 단체 가입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② 가입 단체는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7조(의결 기구의 종류) 본 회의 의결기구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확대집행위원회, 임시확대집행위원회로 한다.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7조(의결 기구의 종류) 본 회의 의결기구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9조(회기)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 ② 확대집행위원회 : 격월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확대집행위원회 : 임원의 결의 또는 확대집행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9조(회기)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 ② **운영위원회** : 격월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 임원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확대집행위원의 임면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운영위원**의 임면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11조(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대표, 개인회원, 집행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 공간에 소집내용을 게시하였거나 위원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확대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확대집행위원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확대집행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u>운영위원회</u> 구성 및 소집) ① <u>운영위원회</u>는 가입단체의 대표, 개인회원, 집행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u>운영위원회</u>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u>운영위원회</u>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 공간에 소집내용을 게시하였거나 위원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u>운영위원회</u>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u>운영위원회</u>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u>운영위원</u>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 1(의결 정족수) 확대집행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사항은 제9조의 2에 준한다.	제11조의 1(의결 정족수) <u>운영위원회의</u> 의결정족수 등 사항은 <u>제10조의 1</u> 에 준한다.
제11조의 2(확대집행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확대집행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확대집행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확대집행위원회의 운영은 출석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u>운영위원회</u> 소집의 특례)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u>운영위원회</u>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때 ② <u>운영위원회</u>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u>운영위원회</u>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u>운영위원회</u> 운영은 출석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3(서면 결의금지) 확대집행위원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11조의 3(서면 결의금지) <u>운영위원회</u>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11조의 4(확대집행위원의 임기) 확대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 4(<u>운영위원회</u>의 임기) <u>운영위원</u>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본 회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확대집행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 각 단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 1(감사의 업무) ①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확대집행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확대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하자가 드러나면 관련 위원의 해임을 집행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은 관계 위원의 해임을 확대집행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본 회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 각 단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 1(감사의 업무) ①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하자가 드러나면 관련 위원의 해임을 집행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은 관계 위원의 해임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5조(집행위원의 선임 방법) ③ 집행위원의 해임은 확대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5조(집행위원의 선임 방법) ③ 집행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제 7 장 상 벌 23조의 1(벌) ② 특별한 사유나 통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며, 특별한 사유에 관련하여 회원존속 여부는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상 벌** 23조의 1(벌) ② 특별한 사유나 통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며, 특별한 사유에 관련하여 회원존속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확대집행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 2(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확대집행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확대집행위원회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 2(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 3호 안건 : 2023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임원 선출의 건

1. 상정이유

❍ 정관 제 11조에 따라 확대집행위원회를 선임하고자 함.
❍ 정관 제 12조에 따라 2023년도 신규감사 2인을 선출하고자 함.
❍ 정관 제 16조에 따라 집행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근거

제11조(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대표, 개인회원, 집행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2조(감사) 본 회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확대집행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 각 단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6조(집행위원의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의결주문

❍ 2023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확대집행위원회와 감사 선출, 집행위원의 선임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4호 안건 : 2023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계획의 건

1. 상정이유

❍ 2023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근거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2023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사 업 명	기 간	내 용
상담국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소	3~12월	- 월별 1회, 총 10회 활동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 이후 논의
교육국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4~12월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3~12월	- 교육기획팀이 계획
	노동인권교육 교안 업그레이드	2~12월	- 초등교안을 수정, 보완 - 중학교 과정은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 교안 연구,개발
사무국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3~12월	- 분기별 1회, 청소년 축제 홍보부스운영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3~12월	- 인권단체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 - 직업학교 노동인권교육 진행
	현장실습 대응	3~12월	- 교육청 모니터링 - 실태조사 이행사항 점검
	일반고 직업과정위탁교육 TF팀	3~12월	- 직업학교 교육을 받는 청소년지원확대를 위한 활동
	회원 조직사업	2~12월	- 웹카드, 소식지발행 - 단체 영화관람 - 12월에 감사키트(년1회)
	재정 후원사업	6월~8월	-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연계 티켓제작 후원사업진행
	연대사업 및 현안대응사업	1~12월	- 광주 NGO 센터 - 혐오대응네트워크 - 전국현장실습대책위 - 광주교육시민연대 - 기타 현안에 대응
연구소	노동인권 교과 연구회 운영	1~12월	- '노동인권'교과 학습 자료 개발
	노동인권 학생동아리 지원	1~12월	- 노동인권 학생동아리 지도교사 매뉴얼 개발 및급노동인권
	노동인권 교사연구회 지원	1~12월	- 교사연구회 학습 모임 지원
	직업교육바로세우기 시민행동(준) 참여	1~12월	- 준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기구 창립 견인

□ 2023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 사업계획

1.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목표 : 광주지역 청소년 대상 캠페인 분기별 운영

2) 추진방법

- 청소년 거점장소, 축제 부스 등 방문
- 캠페인 내용 : 청소년노동인권 감수성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문구, 홍보물품은 기존 제품 활용(밴드)	
			0

2.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소속 청소년
○ 사업내용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기관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 추진목표 : 광주시와 진행하고 있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추진방법

- 대상을 학교밖 경계에 있는 기관까지 넓혀 진행. 직업계고(직업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확대, 발굴.
- 민주인권과(시청) 인권단체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 - 심사결과 2월말 예정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관련기관 간담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쉼터, 직업학교 등 관련 기관의 교육 요구 파악	2023.3.1.~ 2023.12.31.
간사 활동	. 관련 기관 교육 일정 조정 . 교육 컨텐츠 자료 수집을 비롯한 실무 집행	2023.3.1.~ 2023.12.31.
교육 컨텐츠 개발	. 기존 노동인권 교육 컨텐츠 자료 조사 . 2023년 개정된 노동관련 법안 조사 . 교육계획서 및 교육 PPT 제작 . 전문강사단 회의를 통한 수정 및 보완작업 . 교육진행후 교육내용 및 평가공유	2023.3.1.~ 2023.12.31.
노동인권 교육	.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 2023년 바뀐 노동법 포함한 실전 노동법 교육 . 청소년 노동경험공유,상담, 권리홍보활동	2023.5.1.~ 2023.12.31.
노동인권 캠페인	. 노동인권교육과 연관된 노동인권 의식 함양 청소년축제 캠페인 및 홍보 용품 배포	2023.5.1.~ 2023.12.31.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8,080	(-100%)	
보 조 금 (소계)		8,000	(-99%)	
자문위원회	인건비	640 (8%)	○ 80,000원*4인*2회	무통장입금
	사업진행비	80 (1%)	○ 8,000원*5명*2회	유리알카드
교육컨텐츠 개발	사업진행비	720 (9%)	○ 8,000원*4명*10회 ○ 8,000원*25명*2회	유리알카드
노동인권 교육	인건비	5,000 (63%)	○ 200,000원*25회	무통장입금
노동인권 캠페인	사업진행비	1,560 (19%)	○ 홍보용품 3,000원*520명	무통장입금
자 부 담 (소계)		80	-1%	
노동인권 캠페인	업무진행비	80 (1%)	○ 문구 80,000원	유리알카드

3.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TF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대상 : 직업과정위탁교육 관계자

❍ 추진목표 : 직업과정위탁교육을 대한 지원확대 운영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2)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TF팀	교육청 업무당담자, 직업교육기간 담당자, 교문위등과 함께 일반고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 활동	2023.03.~2023.12.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회의비	400,000
			400,000

4. 현장실습 대응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목표 : 현장실습 및 선도기업 지정에 관련 대응사업

2)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현장실습 대응사업	- 현장실습 규정 모니터링, 실태조사 이행사항 점검	2023.03.~2023.12.
	- 현장실습선정위원회 참여하기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협의비	300,000
			300,000

5. 회원 조직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 사업내용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조직

2)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기존 회원	- 소식지와 감사키트 전달(우편,방문) - 단체 영화관람(다음소희)	2023.02.~2023.12.

- 3월 『다음소희』 영화 단체관람
- 상반기 웹소식, 하반기 소식지 발행
- 감사키트(12월)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감사키트 구성품 (7,000*100명*1회)	700,000
		단체 영화관람 (6000* 50명)	300,000
		우편요금	50,000
		포장 등 필요한 문구	50,000
			1,100,000

6. 재정 후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6. ~ 2023. 8.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 사업내용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재정후원사업

2)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재정 후원사업	-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연계 티켓제작 후원사업진행	2023.06.~2023.8.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홍보비	홍보사업비	리플렛 비용	500,000
		티켓 제작 비용	200,000
			700,000

7. 현안 사업 및 연대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연대단체 및 관련 기관

❍ 사업내용 : 광주지역의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및 교류를 이어나가고 각종 네트워크 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연대를 지속하고자 함.

2)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대외사업비	전국네트워크 분담금	100,000
		광주 NGO 센터 회비(연 1회)	50,000
		인권단체협력사업 자부담(연 1회)	80,000
		혐오대응네트워크 분담금(20,000*12개월)	240,000
		기타 현안 연대사업비	500,000
			970,000

8. 홍보

- 홈페이지에 상시자료 업로드

□ 2023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국 사업계획

1.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2. 네트워크 강사단 역량강화교육(교육기획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 사업내용 :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① 역량강화 교육 계획(안)

구분	내용	세부내용
3월	영화관람	『다음소희』 영화 단체관람
5월	노동역사	노동의 역사와 변천사
6월	인권교육	아동노동인권
9월	인권교육	장애인 노동에 대한 이해
10월	노동법	개정된 근로기준법 정리
11월	노동조합	노동조합 바로알기 (학교비정규직 등)

3. 노동인권교육 교안 수정보완 (교안개발팀)

○ 사업기간 : 2023. 2. ~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교안개발팀
○ 사업내용 : 노동인권교육 업그레이드 및 개발

상반기는 초등교안을 수정, 보완하고 중등교안을 학년별로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 연구,개발한다. 하반기는 초,중등교안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작업을 한다.

① 2023년 교안 연구팀 학년별 주제 내용

학년	세부내용
초5	1차시 노동의 의미 2차시 인간과 로봇의 노동
초6	1차시 아동노동 2차시 아동권리(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중1	노동과 노동자(변천사))
중2	노동자의 권리
중3	알기쉬운 노동법

■ 교육국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교육사업비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500,000
		교육부국장 업무추진비	200,000
		교육국 회의비(50,000*12개월)	600,000
		교안개발팀 업무추진비(100,000*4명)	400,000
		교육기획팀 업무추진비(100,000*3명)	300,000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및 회의비(250,000*12회)	3,000,000
			5,000,000

□ 2023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담국 사업계획

1. 목표

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활동 강화

- 특성화고 외
- 혁신학교 고등학교 추진(5개교)
  성덕고, 전남여상, 광주여상, 송원여상, 숭의과학기술고
- 혁신학교 중학교 추진(4개교)

각화중, 신광중(동구), 우산중, 일곡중(북구), 월곡중, 산정중(광산구), 광주무진중(서구)

② 12회 이상 진행

2. 방식

- 점심시간 학교로·축제로 찾아가는 상담 및 홍보활동
- 참가 학생에게 봉사점수 부여

3. 진행

- 대일밴드·물티슈 홍보물 배포, 피켓 홍보
- 상담 인력 중심으로 네트워크 회원과 함께 진행
- 상담 인력: 김다정, 서연우, 주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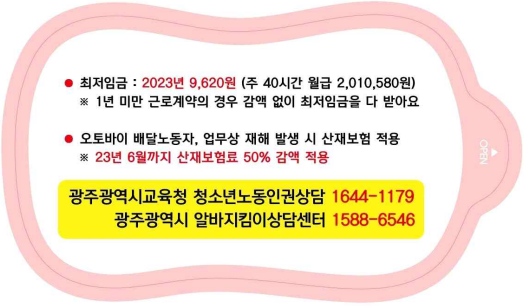

4.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상담사업비	상담홍보활동비(8,000*12회*5인)	480,000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300,000
			780,000

□ 2023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연구소 사업계획

1. 노동인권 교과 연구회 운영

- 배경 : 노동인권 교과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수업 지원 조직 필요성 대두
- 계획 : 노동인권교과서 집필진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과 학습 자료 개발

2. 노동인권 학생동아리 지원

- 배경 : 노동인권 학생동아리 활동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 필요
- 계획 : 노동인권 학생동아리 지도교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노동인권 교사연구회 지원

- 배경 : 노동인권교사연구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 필요
- 계획 : 노동인권 교사연구회 학습 모임 지원

4. 직업교육바로세우기 시민행동(준) 참여

- 배경 : 현장실습폐지와 전국특성화고등학교 전국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 대두
- 계획 : 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기구 창립 견인

□ 2023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예산안

관	항	목	내 용	예 산
수입		이월금액	(차임금 6,000,000)	13,791,711
	회비수입	단체별회비	전교조광주지부(100,000원*12개월)	1,200,000
			YMCA(30,000원*12개월)	360,000
			민주노총광주법률원(30,000원*12개월)	360,000
			광주비정규직센터(30,000원*12개월)	360,000
			참교육학부모회(30,000원*12개월)	360,000
			교육희망네트워크(30,000원*12개월)	360,000
			광주여성노동자회(30,000원*12개월)	360,000
			전국여성노동조합 (30,000원*12개월)	360,000
			광주청년유니온(10,000원*12개월)	120,000
		후원회비	후원회원 89명 (1,000,000원*12개월)	12,000,000
		센터특별회비	200000원*12개월	2,400,000
		강사비 후원	강사료*16%	22,000,000
	회비수입 누계			40,240,000
	기타 수입	후원회원사업	친화사업장 티켓판매	10,000,000
		일시후원	일시후원	200,000
		기타	기타(이자수입)	1,500
	기타수입 누계			10,201,500
수 입 총 계				50,441,500

관	항	목	내 용	예 산
지출	사업비	교육사업비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500,000
			교육부국장 업무추진비	200,000
			교육국 회의비 (50,000원*12회)	600,000
			교육안개발팀 업무추진비 (400,000원)	400,000
			교육기획팀 업무추진 (300,000원)	300,000
			강사단 평가회 및 회의비 (250,000원*12회)	3,000,000
		교육사업비 누계		5,000,000
		상담사업비	상담 후 식사비 8,000원*4인*12회	480,000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300,000
		상담사업비 누계		780,000
		연구사업비	연구소 운영비 (50,000*4회)	200,000
		연구사업비 누계		200,000
			전국네트워크 분담금	100,000

		대외사업비	광주 NGO 센터 회비 (연1회)	50,000
			인권단체협력사업 자부담 (연1회)	80,000
			혐오대응네트워크 분담금 (20,000*12개월)	240,000
			현안 연대 사업비	500,000
		대외사업비 누계		970,000
		일반사업비	기자회견 및 집회진행(50,000원*3회)	150,000
			현장실습 및 선도기업	300,000
			일반고위탁교육과정	400,000
			감사키트 제작	800,000
			회원의 날 행사(6000*50명)	300,000
			CMS 수수료 등	1,000,000
		일반사업비 누계		2,950,000
		사업비 누계		9,900,000
	홍보비	홍보사업비	명함,프랑,후원사업티켓	850,000
		홍보비 누계		850,000
	회의비	운영위회의비	확대집행위원회의 운영(50,000*6회)	300,000
		집행부회의비	집행회의 운영(20000*12회)	240,000
		정기총회의비	정기총회 (제본 및 다과, 식사)	250,000
		회의비누계		790,000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50,000원*12월)	600,000
		전화요금	전화요금	150,000
		출장비	출장비	400,000
		사무용품구입비	일터 정기구독 40,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
		홈페이지 등록	년 1회 등록비	141,300
		보증보험료	센터사업비보증보험,CMS 보증보험	350,000
		운영비 누계		1,741,300
	인건비	전임자급여	2023년 급여	26,280,000
		퇴직연금	시급 10,000*209시간+ 100,000	2,190,000
		명절 상여금	200,000*2회	400,000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2,589,200
		인건비 누계		31,459,200
	예비비	예비비		5,701,000
	지출계			44,740,500
지 출 총 계				50,441,500

제 5호 안건 : 2023년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계획의 건

1. 상정이유

❍ 2023년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근거

제9조의 3(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2023년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계획(안)

□ 위탁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사업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광역시 청소년
○ 목　　적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 주요내용
- 정책 사업
-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 교육 사업
- 홍보 및 캠페인 사업

○ 소요예산 :

□ 사업개요 : 4개 분야, 12개 사업

□ 예 산 액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81,000천원 (100%)	186,835천원 (49.0%)	73,281천원 (19.2%)	120,884천원 (31.7%)

2023년 세부사업계획

분야	세부사업명	시기 (월)	참여횟수		비고
			인원 수	횟수	
정책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3월~10월	3,000명	1회	신설
	정책 토론회	10월	30명	1회	지속
	청소년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구입비 지원	3월~6월	40명	2회	신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활동	4월~12월	2,200명	7회	확대
상담 및 법률 지원	영세사업주 인사·노무 컨설팅	1월~12월	25명	25회	지속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1월~12월	480명	600회	지속
교육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월~12월	70명	14회	지속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 지원	1월~12월	20명	15회	확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월~12월	6명	2회	지속
홍보 및 캠페인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1월~12월	106,000명	327회	지속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과 함께하는 상담소	2월~12월	3,000명	10회	지속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서포터즈 활동	3월~5월	4명	44회	지속
4개	12개	1~12월	114,875	1,048	지속:8 신설:2 확대:2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정책

1.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 사업목적
- ○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의 근로조건 및 의식 현황 파악
- ○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계획 수립 토대
- ○ 광주지역 교원의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파악
- ○ 광주지역 학부모의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파악

□ 사업개요
- ○ 기　　간 : 3월 ~ 10월
- ○ 장　　소 : 광주광역시
-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중·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교원, 학부모
- ○ 내　　용 :
  1)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질문
  2)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질문
  3) 교원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질문
  4) 학부모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질문

□ 추진방법
- ○ 방　　법 : 실태조사
- ○ 인　　원 : 3,000명 (설문 조사 대상인원 수 기준수)
- ○ 협력기관: 광주시교육청,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폴인사이트 등

2. 정책 토론회

□ 사업목적
- ○ 청년·청소년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 청년·청소년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개발

□ 사업개요
- ○ 기　　간 : 10월
- ○ 장　　소 : 광주광역시
-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 관련 단체, 전문가

□ 추진방법
○ 방　법 : 실태조사, 점검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현황 공유 및 정책 논의
○ 협력기관 : 광주시교육청,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청년유니온, 시의회 등

3. 청소년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 배달라이더의 안전의식 고취
○ 청소년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3월 ~ 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거주 만 24세 미만 청소년 배달라이더
○ 내　용 : - 이륜차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사고 대처방안
- 이륜차 무보험 운행 시 위법 사항 예방안내
- 이륜차 점검 방법
- 보호장비 지원

□ 추진방법
○ 방　법 :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주관
○ 횟　수 : 2회(20명*2회)
○ 협력기관: 광주시교육청, 전교조 광주지부 직업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활동

□ 사업목적
○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
○ 2023년도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수요 확보를 바탕으로 인증 업소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4월~12월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 사업장, 광주시민

□ 추진방법
○ 모집·조사·선정 3회, 홍보 및 지원 4회

4-1.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모집·조사·선정

□ 사업목적

○ 기선정·유지 중인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지속성 확보

○ 광주지역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친화사업장 선정

□ 사업개요

○ 기　　간 : 5월 ~ 8월

○ 대　　상 : 1) 기선정·유지 중인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77곳)
2) 신규 신청 사업장 (30곳)

□ 추진방법

○ 횟　　수 : 3회 (서류심사 1회, 현지조사 1회, 선정심의위원회 1회)

○ 인　　원 : 100곳 (현지조사 사업장 개수 기준)
※22년 기선정 사업장 77곳 중 희망 유지업소 70곳 예상 + 신규 신청 사업장 30곳

○ 방　　법 :

	22년 선정 기존 사업장 (77곳)	23년 신청 신규 사업장
5월	재신청 서류 접수 안내	유관기관 접촉 SNS 홍보 현수막 홍보
6월	신청서 접수 1. 주휴수당 확인서 2. 청소년 근로계약서 사본 3. 결격사항 여부 확인서	신청서 접수 1. 신청서 (신규) 2. 사업장 소개서 3. 주휴수당 확인서 4. 청소년 근로계약서 사본 5. 사업자 등록증 6. 사업자 명의 통장 7. 개인정보 동의서
	서류심사 및 보완 요청	
7월	현지조사 (조사요원 4인, 1곳 당 15,000원)	
8월	선정 위원회 → 선정 결과 발표 → 사업주 선정 안내 ※ 선정 심의위원회 별도 운영 : 5인 (시청1, 센터장1, 자문위원3)	

4-2.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홍보 및 지원

□ 사업목적

○ 광주지역에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홍보

○ 2022년 선정된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8월~12월

○ 대　　상 : 1) 기선정·유지 중인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2) 신규 선정 사업장

□ 추진방법

○ 횟　　수 : 4회 (사업장 지원 1회, 홍보물 배포 1회, 매체 홍보 1회, 만족도 조사 1회)

○ 방　　법 : 1) 친화사업장 홍보 (리플렛 배포 및 부착)
2) 친화사업장 지원 (현판,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3) 친화사업장 홍보 (블로그, SNS, 신문 등 매체 홍보)
4) 2023년 최종선정 사업장 대산 만족도 조사 실시

상담 및 법률지원

5. 영세사업주 인사노무 컨설팅

□ 사업목적

○ 광주지역 청소년 시설 기관의 인사 제도 정비를 통해 청소년 대상자에게 안정된 서비스 제공

○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하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1월 ~ 12월 (연중)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1) 청년·청소년 고용 사업장 사업주 (10인 미만 사업장)
2) 청소년 시설·기관

○ 내　　용 :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기초 인사노 무 컨설팅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등)

□ 추진방법

○ 방　　법 : 영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진행 (진단/방안제시/사후점검)

유관기관 접촉 ➡ 사업주 모집 공고 ➡ 마을 노무사 신청 ➡ 집중 컨설팅 (현황 진단 및 대안 제시) ➡ 컨설팅 결과 수합 및 분석

○ 횟수 및 인원 : 25회, 25명 (1회당 사업주 1인 기준)

○ 협력기관: 외식업중앙회 등

6.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운영

□ 사업목적

- ❍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보호
- ❍ 청년·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 ❍ 지역 청년·청소년에게 노동인권센터 인지도 향상을 통한 방문 빈도 증가

□ 사업개요

- ❍ 기　　간 : 1월~12월(연중)
- ❍ 장　　소 : 광주광역시
- ❍ 대　　상 : 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 노동자
- ❍ 내　　용 :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권리구제 활동, 상담결과 정리

□ 추진방법

- ❍ 방　　법 : 온라인(카카오톡, 화상) 및 오프라인 상담
- ❍ 횟　　수 : 600회 (월 평균 50회)
- ❍ 인　　원 : 480명 (월 평균 40명)

교육

7.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사업목적

- ❍ 노동인권 의무 교육 대상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및 산업안전 예방의식 함양

□ 사업개요

- ❍ 기　　간 : 1월~12월
- ❍ 장　　소 : 광주지역 청소년기관·단체
-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기관·단체
- ❍ 내　　용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안 개발 및 찾아가는 교육
  - 1) 노동인권 감수성
  - 2) 노동의 의미와 가치
  - 3) 노동 관련 법률과 피해구제방법
  - 4) 산업안전 예방의 중요성
  - 5) 유관기관 인사노무교육(근로기준법, 기타노동법 실무)

□ 추진방법

○ 방법 : 청소년 기관 활동 경험 청년교육활동가(보조강사) 운영(2명)
노동인권 관련 동아리 접촉, 청소년 교육기관·단체 신청 접수

○ 인원 : 70명(교육 14회*5명)

□ 활동계획

기간	내용	비고
1월~12월	신청 접수 및 교육	
6월, 12월	교안 수정 및 평가 회의	

8. 청소년노동인권 동아리 지원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지원

○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 역량 함양

□ 사업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장 소 : 광주지역 청소년기관·단체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기관·단체 노동인권 동아리

○ 내 용

1)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멘토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지원

□ 추진방법

○ 방 법 : 멘토 양성 교육 및 동아리 운영 지원

○ 횟 수 : 양성교육 5회, 동아리 운영 지원 10회

○ 인 원 : 20명(멘토 양성 4명, 동아리 인원 20명(4개 기관*5명))

○ 내 용 :

1) 멘토 양성

회기	내용	비고
1강	청소년 노동인권	박현준
2강	노동인권 교육의 의미와 원칙	박현준
3강	노동법	이연주
4강	동아리 운영 실무1	박현준
5강	동아리 운영 실무2	박현준
6강	동아리 운영 실무3	윤채호

2) 동아리 운영 지원

구분	일시	내용
교사-멘토 간 만남(회의)	3월	동아리 운영 관련 논의(연간 계획, 소통 체계 등), 발대식 준비
동아리 운영	3월~12월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 매월 1회 운영
멘토 회의	3월~12월	후기록을 바탕으로 매월 1회 운영

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사업목적

○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노동인권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 사업개요

○ 기　　간 : 3월~12월
○ 대　　상 : 광주지역 노동인권, 교육 전문가
○ 내　　용 :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추진방법

○ 방법 :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운영, 전문가 자문
○ 횟수 : 2회(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회)
○ 인원 : 6명(자문위원 3명, 전문가 분야별 1인*3명)

홍보

10.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 사업목적

○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 및 여론 조성
○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구제 기회 참여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및 광주 시민
○ 내　　용 :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 추진방법

○ 방　　법

구분	내용	비고
SNS 운영	· 노동상식 게재(주1회) · 센터 활동 소식 게시(주1회) · 노동토론(주1회) · 센터 사업 웹자보 게재(연4회)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연18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블로그 운영	· 노동상식 게재(주1회) · 노동토론(주1회) · 센터상담사례(연12회) · 찾아가는노동인권교육사례(연12회) · 센터 사업 안내(연10회)	네이버 블로그
홍보 광고	· 유료 홍보 광고(연10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0회 · 현수막 게첨(연2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11.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과 함께하는 상담소

□ 사업목적

○ 일하는 청소년(알바 노동, 현장 실습, 배달 노동자 등)의 인권 향상을 위한 광주 내 사회적 여론 조성

○ 지역 청년.청소년의 노동권리 구제 및 노동 침해 사례 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2~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및 광주 시민

○ 내　　용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상담소 진행

□ 추진방법

○ 방　　법

구분	내용	횟수
상담소	한 곳에서 약 2~3시간 머무르면서 상담과 켐페인을 함께 진행	10회
캠페인	청소년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회적 인식 개선, 현장실습 관련 노동상식 안내 등)	

12.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서포터즈 활동

☐ 사업목적

○ 센터 사업 홍보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 확대
○ 노동 의제를 통해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자체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3월~5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 내　　용 :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 추진방법

○ 방　　법

구분	기간	제목	내용
방향 다지기 (3월~4월)	1차	발대식	청소년노동인권소개, 활동 안내
	2차	용어 익히기	상반기 활동안내, 노동관련 개념 익히기
	3차	노동인권교육	서포터즈 노동 사례보기, 노동인권교육
활동 진행 (4월~5월)	4차	센터 사업소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소개
	5차	중간결산 및 프로젝트 준비	상반기 활동 돌아보기, 프로젝트 준비(미니 상담소 운영)
	6차	프로젝트 활동 준비	미니 상담소 운영 준비, 상담소 홍보
	7차	프로젝트 활동 준비	미니 상담소 운영 및 상담소 보완
	8차	센터 사업 소개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인터뷰, 프로젝트 보완
	9차	프로젝트 활동	미니 상담소 의뢰 카드뉴스 제작
	10차	프로젝트 마무리	미니 상담소 당첨자 발표, 홍보물 게시
	11차	수료식	서포터즈 활동 수료식

○ 추진방법

구분		인원	횟수	활동내용
소개글 작성 3월~5월)	센터사업 소개	4명	9회	센터 사업 블로그 소개글 작성
	친화사업장 방문 수기	4명	2회	(선택) 친화사업장 방문 수기글 작성
카드뉴스 제작 (4~5월)		4명	1회	센터 홍보영상 SNS게시, 서포터즈 개별 업로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관

개정 2022.02.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교육사업 :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 자료 개발 및 강사단 양성
② 상담사업 : 법률지원단을 통한 상담 및 법률대리
③ 홍보사업 :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캠페인
④ 연구사업 : 청소년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⑤ 정책사업 :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정책 연구
⑥ 기타사업 : 본회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사회적 요구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구성) 회원은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조직의 가입 및 탈퇴)
① 신규 단체 가입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확대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② 가입 단체는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확대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은 자유로이 본 회를 가입,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7조(의결 기구의 종류) 본 회의 의결기구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확대집행위원회, 임시확대집행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결 기구의 기능)
① 본 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한 사항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기)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
② 확대집행위원회 : 격월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확대집행위원회 : 임원의 결의 또는 확대집행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1(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명,문자,전화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참석은 참석회원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확대집행위원의 임면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의 3(회의록) 총회 등 각 단위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 등 참여 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11조(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대표, 개인회원, 집행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 공간에 소집내용을 게시하였거나 위원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확대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확대집행위원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확대집행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 1(의결 정족수) 확대집행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사항은 제9조의 2에 준한다.

제11조의 2(확대집행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확대집행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확대집행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확대집행위원회의 운영은 출석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3(서면 결의금지) 확대집행위원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11조의 4(확대집행위원의 임기) 확대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본 회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확대집행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 각 단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 1(감사의 업무)

①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확대집행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확대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하자가 드러나면 관련 위원의 해임을 집행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은 관계 위원의 해임을 확대집행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3조(집행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회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① 집행위원장 : 1인
② 교육국장 : 1인
③ 정책국장 : 1인
④ 상담국장 : 1인
⑤ 사무국장 : 1인
⑥ 부설기관장 : 각1인

제14조(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을 두어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15조(집행위원의 선임 방법)

① 집행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본 회 가입단체 회원 중 본 회 가입단체 회원, 개인회원 중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인 중에 선출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이 추천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집행위원의 해임은 확대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집행위원의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집행위원의 직무 및 집행위원회의)
① 집행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② 각 집행국은 본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 집행일체를 보좌한다.
③ 각 집행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본 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판공비로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소임활동의 경우는 센터 급여체계에 따른다.
④ 집행위원회의 :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경비 조달 방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단체분담금 및 찬조금, 후원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납부 방법) 본 회의 회비는 월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분담금은 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르되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초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한다.
②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6 장 부설기관 등

제22조(부설기관 등)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단 기관운영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7 장 상 벌

제23조(상)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및 기타 정기총회에서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의 1(벌)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은 정기총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한다.
② 특별한 사유나 통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며, 특별한 사유에 관련하여 회원존속 여부는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확대집행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 1(해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4조의 2(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확대집행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확대집행위원회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본 정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중략.
본 정관은 2016년 1월 27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17년 2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18년 3월 20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 22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20년 3월 17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20년 11월 19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22년 2월 24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memo